

구미시4-H후원기금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의안번호	
------	--

제출일자 2010. 4. .

제 출 자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

1. 수정이유

-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보존을 위하여 기금 운용 시 원금은 적립하고 그 이자로 4에이치 활동 재원으로 활용토록 하기 위함

2. 수정 주요내용

- 제5조제2항 중 “기금은 원금과”를 현행대로 하기 위하여 “기금 중 원금은 적립하며”로 수정

3. 참고사항

-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제4조, 제13조

구미시4-H후원기금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구미시4-H후원기금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
수정한다.

제5조제2항 중 “기금은 원금과” 를 현행대로 하기 위하여 “기금 중
원금은 적립하며”로 수정한다.

수정안 조문 대비표

제 정 안	수 정 안
제5조(기금의 운용·관리) ① 기금은 농업 기술센터의 회계관계공무원이 관리하며, 시 금고에 예치한다. ② 조성된 <u>기금은 원금과</u> 그 이자로 4H 활동의 재원으로 활용한다. ③(생략) 1.2.3. (생략)	제5조(기금의 운용·관리)① ②.....기금 중 원금은 적립하며..... ③(제정안과 같음) 1.2.3. (제정안과 같음)

구미시4-H후원기금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

구미시4-H후원기금운영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명 “구미시4-H후원기금운영조례”를 “구미시 4-H활동지원기금 운영 조례”로 한다.

제1장 총칙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구미시 4-H단체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구미시 4-H활동지원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·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기금의 설치) ① 시장은 이 조례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안정적으로 조달하기 위하여 구미시 4-H활동지원기금(이하 “기금”이라 한다)을 설치한다.

② 기금의 존속기한은 2015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.

제3조(기금의 용도)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위해 사용된다.

1. 4-H 교육·행사 지원
2. 4-H과제활동 및 4-H단체지원
3. 학생4-H회원 장학금 지원
4. 4-H 관련 시설의 설치 및 운영을 위한 지원
5. 4-H 회원 복지 증진을 위한 지원
6. 기타 4-H육성사업

제4조(기금의 조성)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한다.

1. 시 출연금
2. 기금운용으로 발생한 이자 수입금
3. 기타 수입금
4. 개인·법인 또는 단체가 출연하는 금전·물품 그 밖의 재산

제5조(기금의 운용·관리) ① 기금은 농업기술센터의 회계관계공무원이 관리하며, 시 금고에 예치한다.

② 조성된 기금 중 원금은 적립하며 그 이자로 4-H활동의 재원으로 활용한다.

③ 기금의 관리·운용에 관한 다음사항에 대해서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.

1. 기금운용계획 및 결산보고사항
2. 기타 기금운용에 관한 사항
3. 4-H단체육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

제2장 운영 위원회

제6조(구성) ①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·관리를 위해 구미시 4-H활동지원기금운용심의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

② 위원회는 당연직인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한 10인 이내로 한다.

③ 위원장은 부시장이고, 부위원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하며, 위원은 지역 내의 시의원 1인과 농업관련단체장, 선도농업인 관계공무원, 기타 4-H회 육성발전에 기여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.

④ 위원회의 사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, 간사는 농업기술센터 지도육성담당으로 한다.

제7조(기능) 위원회는 기금의 조성 및 운용·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1. 기금조성 및 기본운영계획 심의에 관한 사항
2. 기금결산에 관한 사항

3. 기타 기금운용에 따른 주요사업에 관한 사항

제8조(위원장의 직무)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.

②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제9조(위원의 임기) 공무원이 아닌 위원인 임기는 3년으로 하며, 연임할 수 있다. 당연직 위원인 경우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.

제10조(회의) 심의회의 회의는 필요가 있을 때 수시로 소집하며,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재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3장 보칙

제11조(회계 관직 지정) ①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·관리하기 위하여 기금 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.

② 기금운용관은 농촌지원과장이 되고 기금출납원은 지도육성담당으로 한다.

③ 기금운용관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보관·관리하여야 한다.

제12조(기금의운용 계획 및 결산) 기금운용관은 매 회계연도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, 출납 폐쇄를 3월 이내 시장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.

제13조(관계규정의 준용) 기금의 집행은 「구미시 재무회계 규칙」이 정하는 제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.

제14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